

#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64 |
|----------|-----|

제출일자 : 2018. 12. 5

제 출 자 : 달성군수



##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의 규정에 따라 지역관광 진흥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기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한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 사업자의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민간경상 보조금의 운영비 지급 대상 및 기준 규정 (안 제7조 제6항)

나. 운영비 지급한도 규정 (안 제7조 제7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관광진흥법」 제76조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10. ~ 10. 30.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근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이하 “운영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홍보 등의 관광 사업으로 군의 관광 진흥 활성화에 기여할 것
2. 보조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⑦ 제6항에 따른 운영비는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7조(보조금) ① ~ ⑤ (생략) | 제7조(보조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
| <신설>                | <p>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근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이하 “운영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p> <p>1.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홍보 등의 관광사업으로 군의 관광 진흥 활성화에 기여할 것</p> <p>2. 보조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p> |
| <신설>                | <p>⑦ 제6항에 따른 운영비는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

##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 문화체육관광부 법령 유권해석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광진흥법」 제41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45조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이 포함되며,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 ‘조례로 정하는 보조금’의 범위에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운영비)이 포함됨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별표 3 지방보조금

#### 1. 일반원칙

①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2 내지 제32조의10

②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③ 예산편성 원칙

-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

①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 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보조금 총액한도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 $\times(1+\text{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 보조금 예산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지방비 부담분 포함) 등은 제외

\*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 ③ 관리기준 등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